

‘이전지역인재’ 및 ‘비수도권 지역인재’ 관련 법률 및 정부 지침 등에 따른 기준입니다.

(‘이전지역(강원)인재’ 관련 사항은 한국관광공사의 이전지역(강원특별자치도)을 적용합니다.)

실제 채용공고 시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추후 실제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아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,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합니다.

□ 이전지역(강원)인재

< ‘이전지역(강원)인재’의 개념 >

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(한국관광공사)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가. 이전지역 학교
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 학교 등의 분교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나.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

- ①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 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②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
다.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 - 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②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 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 - 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본교의 위치와 본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 ○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본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본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○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본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본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 ○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 ○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 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 ○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 ○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 ○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 ○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 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 ○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 ○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 ○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 ○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 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 ○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 ○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

< '비수도권 지역인재'의 개념 >

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가.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예시
○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○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※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지 여부는 해당 학교 등을 통해 지원자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○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○ 기타 2개 대학 이상 졸업자 등은 아래 기준을 따름

- (1)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서 제외
- (2) 지방 소재 학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비수도권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서울·경기·인천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지방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서울·경기·인천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지방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